

12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令 및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98號 1993. 6. 11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<시행령개정 안 주요골자>

- 가. 현재 개발부담금은 3,300제곱미터이상(도시계획구역은 1,650제곱미터이상)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대도시는 660제곱미터이상, 6대도시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은 990제곱미터이상, 비도시계획구역은 1,650제곱미터이상으로 부과대상기준면적을 조정함.
- 나.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의 종류를 도시계획법, 국토이용관리법등 43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, 지구등의 변경으로 함.
- 다. 용도지역변경후 개발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, 개발

사업시행전에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취득시부터 용도지역변경까지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을 용도지역변경을 기준으로 2년전으로 함.

라.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자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되, 납무의무자가 사업완료후 25일이내에 국가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처분가격을 신고하면 그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그 사업을 주택·공장등 13종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정함.

<시행규칙개정안 주요골자>

- 가.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

매입한 토지가격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공공기관을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 및 지방세감면기관등으로 정함.

- 나. 농지전용부담금등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종류를 정함.
- 다. 콘도미니엄건설사업등 감정평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정함.
- 라.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

가함.

2. 의견제출

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6월 30일까지 그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 : 토지국장, 전화번호 500-294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